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896호

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충남도청(내포) 신도시 RH12BL)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919호(2012.01.02.)로 승인 고시된 충남도청(내포) 신도시 내 RH-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9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충남도청(내포) 신도시 내 RH-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

2. 사업시행자

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시행지역 : 충남도청(내포)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RH-12BL

(충남 홍성군 홍북면·예산군 삽교읍 일원)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[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

국민임대 → 공공임대]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